경희대학교 현물기부 처리지침

시행일: 2021. 07. 06.

- 제1조(목적) 본 지침은 경희대학교(이하 '본교') 현물기부의 수증·관리·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물기부의 처리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현물기부라 함은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품을 말한다.
- 제3조(접수 및 관리) ① 현물기부의 기본적인 접수 및 관리는 「발전기금관리규정 제3장 제8조」에 따라 처리한다.
 - ② 현물기부의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 - 1. 현물기부 의사를 가진 기부자로부터 "현물기부물품 기탁서"를 제출받는다.
 - 2. 기부물품의 필요여부 및 적정 필요수량, 유통기한, 인수부서, 보관장소, 운송비용 등을 확인하여 수증 여부를 판단한다. 이 경우 본교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, 제5조에 따른 수증 제한 및 사용이 부적합하거나 과다한 운송비용이 발생하는 물품은 거절한다. 수증 여부에 대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별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, 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. 물품별 관련 부서는 <별표1>을 참고하여 대외협력처에서 정한다.
 - 단, 기증유물, 미술품 등 공정가치가 확인되지 않는 기부물품은 기부자로부터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서를 제출받아야 하며, 이를 근거로 수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
 - 3. 회계처리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제4조에 따라 기부물품의 가치를 산정하고, 기부자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시 기부물품의 환산가액 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, 구입영수증, 장부가액 또는 장부가액확인서, 수입원장, 원가명세서,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받는다.
 - 4. 기부물품의 수령방법 및 수령일을 기부자와 논의하여 정한다.
 - 5. 기부물품 수령 시, 물품 사진이 첨부된 "현물기부물품 인수증"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- 제4조(수익인식과 가치측정) ① 현물을 기부받을 때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.
 - ② 현물기부 물품의 환산가액은 기부자의 유형에 따라「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」또는「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」에 따른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산정한다.
 - ③ 기부자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기부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, 감정이 어려운 경우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」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현물의 가치를 평가한다. 단, 추정가치가 1억 원 이상인 물품 중 가치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별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, 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산정한다.
- 제5조(수증 제한) 다음의 경우에는 현물기부 물품 수증을 제한 할 수 있다.
 - ① 발전기금관리규정 제3장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수증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 - ② 본교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물품으로 소비가 어려운 경우
 - 단,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증을 하게 되는 경우 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할 수 있다.
- 제6조(처리 절차) 현물기부의 행정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 - •「물품관리규정」의 비품으로 분류된 경우

- ① 해당부서에서 제3조 제2항 1호에 따라 "현물기부물품 기탁서" 수령
- ② 해당부서에서 관재팀에 가치산정의뢰 업무연락 발송
- ③ 관재팀에서 해당부서 및 대외협력처로 가치산정 회신 업무연락 발송
- ④ 해당부서에서 대외협력처에 수증 및 수입처리 요청 업무연락(현물기부물품 기탁서 첨부) 발송 해당부서에서 인수부서에 기부물품 인수 요청 업무연락 발송(해당부서와 인수부서가 같은 경우, 생략)
- ⑤ 인수부서에서 제3조 제2항 4호, 5호에 따라 기부물품 수령 후 "현물기부물품 인수증"을 대외협력처로 제출
- ⑥ 대외협력처에서 수증 신청 및 수입처리, 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
- ⑦ 관재팀에서 수증 승인 및 자산등재 절차 진행
- ⑧ 인수부서에서 기부물품 사후 관리
- 「물품관리규정」의 비품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
 - ① 해당부서에서 제3조 제2항 1호에 따라 "현물기부물품 기탁서" 수령
 - ② 해당부서에서 대외협력처로 수증 여부 결정 의뢰 업무연락(현물기부물품 기탁서 첨부) 발송
 - ③ 대외협력처에서 제3조 제2항 2호, 3호에 따라 수증 여부 및 인수부서 결정, 기부물품의 가치 산정
 - ④ 대외협력처에서 해당부서 및 인수부서로 수증 여부 결과 안내 업무연락 발송
 - ⑤ 인수부서에서 제3조 제2항 4호, 5호에 따라 기부물품 수령 후 "현물기부물품 인수증"을 대외협력처로 제출
 - ⑥ 대외협력처에서 현물기부 수입처리, 기부영수증 발급 및 예우
 - ⑦ 인수부서에서 기부물품 사후 관리

제7조(보칙)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 「발전기금관리규정」을 적용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지침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물품별 관련 부서

물품구분	관련 부서	비고
기자재 등 비품	관재팀	「물품관리규정」의 비품
토지 및 건물	재정운영본부, 총무팀, 관리팀, 예산팀	예산팀-세금 관련 심의
유물	중앙박물관, 관재팀, 관리팀, 예산팀	- 예산팀-보관비용 심의
미술품	미술대학/예술·디자인대학, 관재팀, 관리팀, 예산팀	